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: 2026 - 39호(2026. 5. 4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 : 경사식 선대(Slipway) 2개 선대
3. 점용·사용의 장소
  -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-11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 : 6,088.2m<sup>2</sup>(2026. 5. 4. ~ 2027. 5. 3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 - 성 명 : 만물조선 대표 김 용 조
  - 주 소 :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405번길 45

2026. 5. 4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